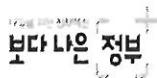


6월은 호국보훈의 달입니다



## 식품의약품안전처



수신 수신자 참조

(경유)

제목 「의료기기법 시행규칙」 개정 알림

---

1. 관련: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총리령 제1542호, 2019.6.12. 공포)
2. 「의료기기법」 개정(법률 제15945호, '18.12.11. 공포)에 따른 후속조치로, 희소·긴급 도입 필요 의료기기 공급 위탁 및 방법, 이물보고의 절차, 해외제조소 현지실사 방법 등을 규정하기 위하여 「의료기기법 시행규칙」을 복임과 같이 개정하였음을 알려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3. 개정령안은 우리처 홈페이지(<http://www.mfds.go.kr>→법령자료→법·시행령·시행규칙)나 국가법령정보센터(<http://www.law.go.kr>)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붙임 「의료기기법 시행규칙」 일부개정령(총리령 제1542호). 끝.

